「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현장실습채용지원금 지원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 사업대상 : 2026학년도 도내 직업계고 28개교 ※ 해당 학교 [붙임1] 참고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기업

○ 주요내용 : (학생) 근속지원금 (기업) 현장실습채용지원금, 교육시설임차료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6학년도 교육시설임차료 지원을 받은 기업 중, 해당 기업에서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최소 이수 기준(20일, 140시간)을 충족한 학생을 채용한 기업
- 채용 학생과 2027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 채용 학생이 2027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시작하는 기업
- 최소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채용 학생에게 최저임금(시급)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 현장실습 수당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기업

※ 제외대상

·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최소 이수 기준(20일, 140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을 채용한 기업(조기복교 학생 포함)
· 채용 학생과 2027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 채용 학생이 2027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기업
· 최소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
· 채용 학생에게 최저임금(시급) 미만을 지급하는 기업
· 학생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 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금액 : 현장실습 기간 동안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 수당을 실제 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실습시간×5,000원 이상

○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

○ 지급방법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 입금

현장실습 수당(2026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 현장실습생은 산업현장 적응 기회로서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과 연계한 실무교육을 받으므로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실습수당을 받아야 함.
-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므로, 근로에 따른 급여가 아닌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을 받음.
- 현장실습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 현장실습 수당 이상(최저임금 40% 수준)을 지급해야 함.

※ 2026년 기준 현장실습 수당 산출 근거

- 최저임금 10,320원×6일×7시간=433,440원(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1주일 수준)
- 433,440원×40%=173,376원(최저임금의 40%)
- 173,376원÷5일÷7시간=4,954원

➪ **2026년의 경우 5,000원**

3 지원절차

❶ 학생 채용	❷ 지원금 신청	❸ 서류 검토	❹ 지원금 지급
기업	기업	경제통상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 학생 채용 ➡	·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반영된 달까지 신청 ➡	· 지원대상 여부, 근로계약, 수당 지급 내역 등 확인 ➡	· 대상 기업 지원금 산정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

학생 채용

○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학생 취업 전환 시기

- 선도기업 : 2026년 11월 1일 이후(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이후)
- 참여기업 : 겨울방학 기간 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 : 채용 학생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반영된 달까지 신청

예시) 2026년 11월 채용 → 2026년 12월 자격 취득 확인 → 2026년 12월 내 신청

신청방법	제출서류		수량	확인 내용
온라인 제출	신청시	① 현장실습채용지원금 신청서	1부	• 직인 및 서명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현장실습 및 취업 기업명 일치 여부 확인
		③ 통장 사본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 확인
		④ 현장실습 수당 이체확인증	1부	• 채용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건 확인 • 현장실습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여부 확인
		⑤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기간·시간, 급여 등 근무 조건 포함 • 최소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여부 확인 • 최저임금(시급) 이상 지급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일 및 근로개시일 확인 • 회사 직인 및 근로자 서명 필수 • 일부가 아닌 전체 페이지 제출
		⑥ 채용확인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중 1개 제출 • 채용 학생 자격취득 여부 확인 • 신청서 제출 월과 채용확인서류 발급 월 동일 • 사업장명 및 채용 학생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채용 학생을 제외한 타 근로자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⑥ 채용확인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최초 1회	⑦ 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부	• 직인 및 서명 필수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직인 및 서명 필수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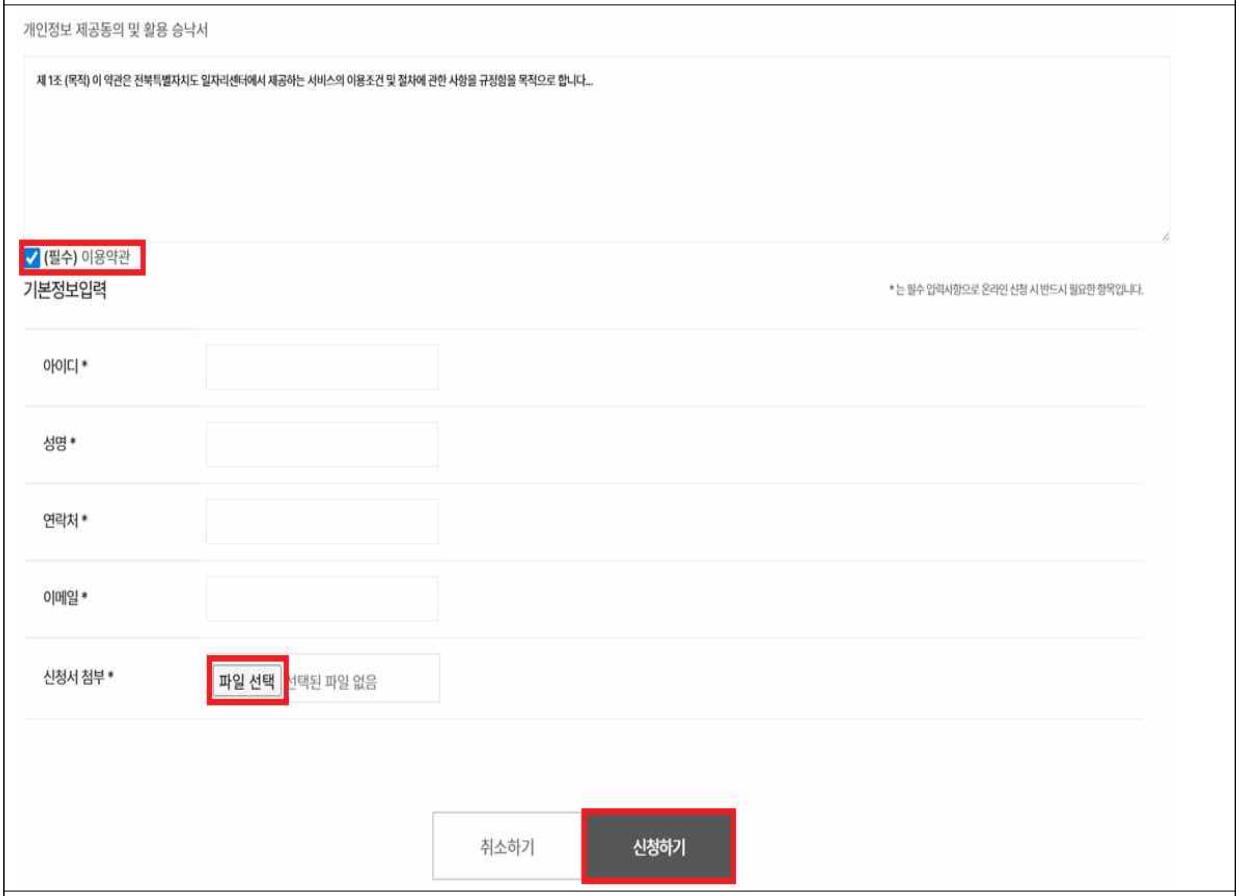
①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https://www.1577-0365.or.kr) 접속 후 로그인



② 운영사업→구인기업 지원사업→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현장실습채용지원금



③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



④ (필수)이용약관 체크→기본정보 입력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서 첨부→신청하기

○ 참고사항

- 스캔(PDF) : 스캐너 또는 스마트폰 앱 활용
- 사진(PNG, JPG 등) 촬영 시 유의사항
  - 서류에 그림자나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선명하게 촬영할 것
  - 문서가 비스듬히 찍히지 않도록 직각에서 촬영할 것
  - 서류가 잘리지 않도록 한 장에 담아 촬영할 것

서류 검토

○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또는 보완 안내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산정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현장실습 기간 동안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한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
- 실제 지급한 수당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 지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

4 유의사항

○ 제출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5 문의사항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담당자(063-280-1006)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붙임1 지원대상 직업계고 28개교

구분	연번	학교명	비고
마이스터고	1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2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3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4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5	남원용성고등학교	
	6	수소에너지고등학교	
	7	이리공업고등학교	
	8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9	전북유니텍고등학교	
	10	전북자동차고등학교	구)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11	전북펫고등학교	
	12	전주공업고등학교	
	13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14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구)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15	정읍제일고등학교	
	16	칠보고등학교	
	17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18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19	강호항공고등학교	
	20	글로벌학산고등학교	
	21	남원제일고등학교	
	22	덕암정보고등학교	
	23	원광보건고등학교	
	24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25	진경여자고등학교	
	26	한국한방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계열)	27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28	함열여자고등학교	